

5. 무역거래교섭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Contents

1. 청약
2. 승낙

1. 청약

■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 (Offer)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말함
- 청약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양 등의 설명, 가격, 수량, 물품인도시기나 방법,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됨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써 청약의 준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에 불과한 것임
-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을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임
-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은 청약의 유인(예비교섭) → 청약 → 승낙의 순서를 거쳐 성립함

1. 청약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청약 (Offer)

자판기의
설치

- 예 • 이것은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으로써 사용자가 동전을 투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함
- 사용자가 동전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동전 투입후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됨
- 자판기에 반환단추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손해배상의무없이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반환단추를 사용하여 투입한 동전을 반환받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 예 • 다음과 같이 다수의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있는 경우
-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
- 확인조건부청약(sub-con offer)
- 신문, TV, 라디오 방송에 의한 광고(advertisement)
- 정찰부 상품진열
- 견적서(quotation), 카탈로그(catalogue), 가격표(price list)
- 경매(auction), 입찰(tender)
- 의사확인장(letter of i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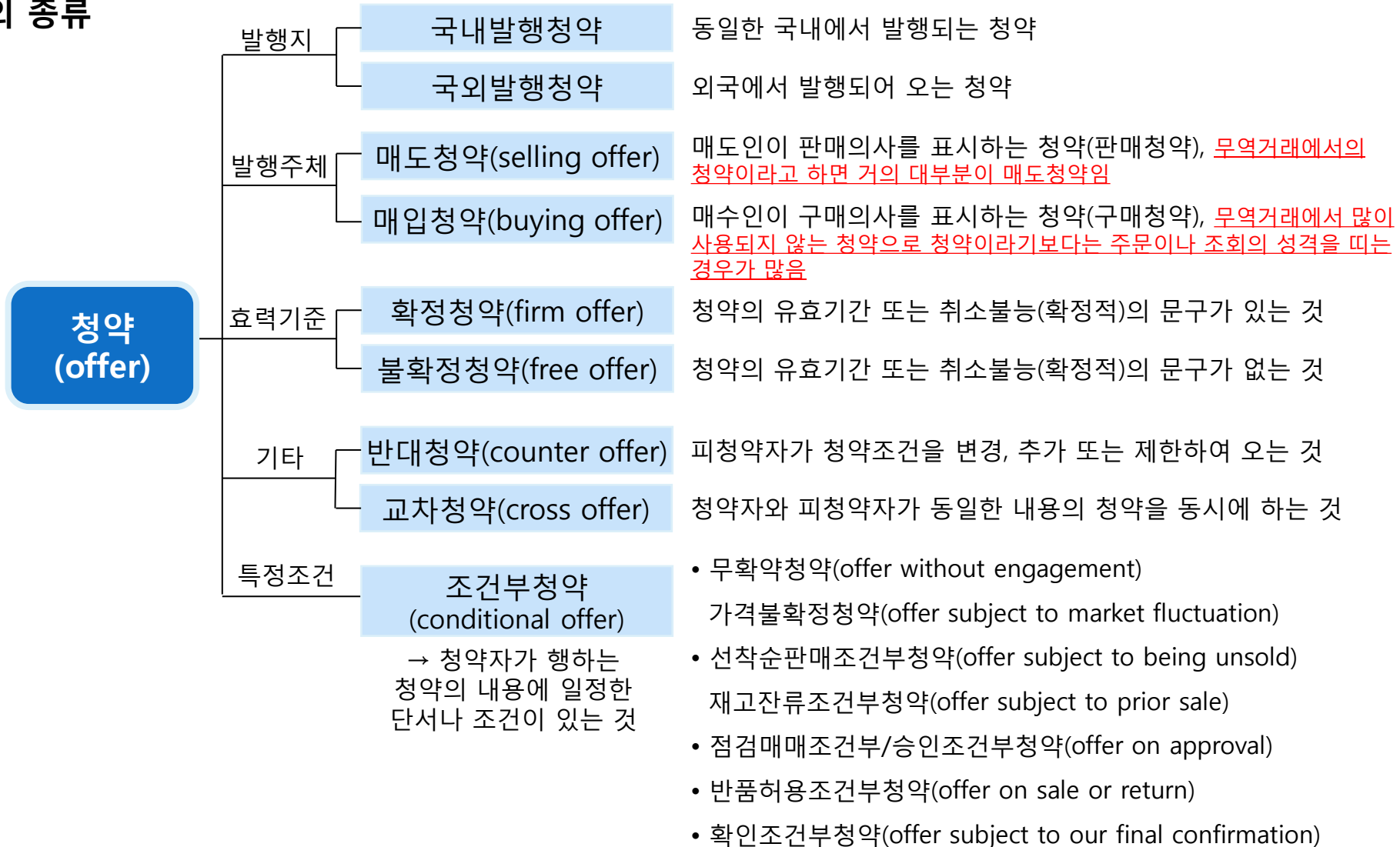
1. 청약

■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Offer)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도인이 홈페이지에서 자사상품의 소개와 함께 계약의 기본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구매의사표시로서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도인이 홈페이지에서 자사상품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우편을 통해 청약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가능한 메시지를 받은 경우• 구매의사가 있는 매수인이 화면상에 나타난 주문서에 계약의 조건이 되는 정보를 입력한 후 클릭하여 거래제의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뉴스그룹, 데이터베이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한 공공의 제안→ 이를 청약으로 보게 되는 경우, 웹사이트 개설자의 입장에서 판매량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p>❖ 전자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는 확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위한 제의가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를 사전에 화면으로 명시하거나 거래약관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p>	

1. 청약

■ 청약의 종류



1. 청약

■ 발행지에 따른 청약의 종류

국내발행 청약

- 청약자가 수출국의 물품공급업자 또는 본사를 대리하여 수입국내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을 말함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 규정하고 있는 "갭류무역대리업자"(오퍼상)가 발행하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여기에 해당됨

국외발행 청약

- 외국의 물품공급업자 또는 제3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을 말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발행청약이 유효하고, 수입허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도 수입승인될 수 있음
 - 국내에 정식의 갭류무역대리업자가 없는 경우
 - 수출용 원자재 수입인 경우
 -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에 의한 수입인 경우
 - 방위산업용 기자재의 수입인 경우

1. 청약

■ 효력기준에 따른 청약의 종류

확정청약 (firm offer)

- 청약자(offeror)가 청약의 내용에 효력의 존속기간(유효기간, validity of offer), 즉 승낙의 기간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청약
- 확정적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약한 것임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의 경우라도 영미법에서는 철회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나, 대륙법이나 비엔나협약에서는 그 기간내에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취하고 그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낙하여야 한다.

불확정청약 (free offer)

- 승낙에 대한 회답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청약
- 청약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청약의 내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불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청약이 취소되기 전에 피청약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됨

❖ 무역계약에서의 불확정청약은 대개 조건부청약들임

1. 청약

■ 효력기준에 따른 청약의 종류

반대청약 (counter offer)

-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
- 원청약에 대한 거절(rejection of the offer) + 새로운 조건의 확정청약(new offer)

교차청약 (cross offer)

-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하는 청약



1. 청약

■ 효력기준에 따른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이란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을 말한다.

- **최종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청약자의 최종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건부청약임) → 청약의 유인
- **시황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제시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무확약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 불확정청약
-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매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 물품의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 **점검매매조건부/승인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상대방이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하고,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 확정청약
- **반품허용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대량물품을 상대방이 일정기간 동안 판매한 후 잔량은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 불확정청약

1. 청약

■ 청약의 통지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통지방법

- 청약은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기존의 방법 :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 팩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receipt rule)

- 청약은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도달주의)
 -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만 그 청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임
 -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늦게 도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
 - 청약 뿐만 아니라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반대청약 등도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1. 청약

■ 청약의 효력소멸

청약의 철회 (withdrawn)

-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함

구분	확정청약(firm offer) (대원칙 : 철회불능)	
	원칙	예외(철회불능)
대륙법계 (한국, 일본, 독일)	철회불능	• 철회불능
비엔나협약	철회불능	• 철회불능(불확정청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철회가능)
영국법	철회가능	• 청약이 날인증서(deed)로 되어 있는 경우 • 피청약자가 이미 약인(consideration)을 제공한 경우
미국법 (통일상법전)	철회가능	• 청약이 서명된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 • 청약이 상인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 • 청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피청약자가 제공한 청약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청약자가 별도로 서명하고 있는 경우

1. 청약

■ 청약의 효력소멸

청약의 거절 (rejection)

- 청약은 피청약자의 거절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됨
- 거절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된 청약은 그 후 피청약자가 마음이 바뀌어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청약의 내용대로 승낙하더라도 청약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청약은 부활되지 않는다.
- 일단 거절한 후 원청약의 승낙을 의도한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거절의 통지보다 빨리 청약자에게 도달시킬 수 있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음(예 : 우편으로 거절한 후, 전보, 텔렉스 또는 전화 등으로 승낙하는 경우)

반대청약 (counter offer)

- 반대청약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의 거절이므로 청약의 효력은 소멸함
- 반대청약의 내용이 새로운 확정청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함

당사자의 사망

- 청약은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됨
- 다만, 청약이 승낙된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의한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청약

■ 청약의 효력소멸

시간의 경과

- 청약은 청약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됨
 - 청약의 유효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 :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 청약의 유효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 ❖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은 물품의 성질, 거래의 관습, 청약이 행해진 환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실문제(question of fact)로서, 그러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법원이 결정할 문제임

후발적 위법

- 청약이 행해진 후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에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됨
 - 예 :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청약을 한 후,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 행해지기 전에 알코올 음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알코올 음료의 판매가 위법이 되는 경우,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됨

승낙

- 청약은 피청약자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됨
-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당연히 그 효력은 소멸됨

2. 승낙

■ 승낙의 개념

승낙 (acceptance)

-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승낙될 필요가 있음, 즉, 청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필요가 있음,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승낙한 것으로 되지 않음

유효한 승낙의 조건

-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여야 함
 - 승낙은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이어야 함
 -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함
 -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야 함
 -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경우, 그 당사자만이 승낙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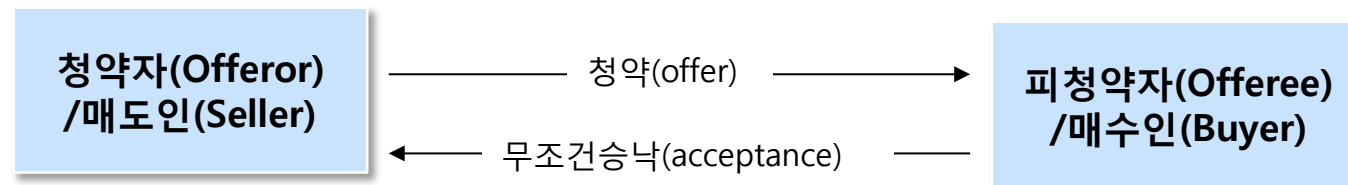
2. 승낙

■ 승낙의 종류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

무조건 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청약의 내용대로 승낙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action)

-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동意的 의사표시를 행위로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이행되는 순간에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예)
 - 매도인의 매도청약(판매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아무런 통지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매수인의 매수청약(구매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아무런 통지없이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2. 승낙

■ 승낙의 종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승낙

조건부 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 피청약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것, 즉 청약의 내용에 변경이나 추가를 행하여 승낙하는 것
- 예 : accepted provided shipment by June(6월 15일까지 선적조건으로 승낙하였음)

부분적 승낙 (partial acceptance)

- 청약의 제조조건들 중에서 일부분만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임

애매한 승낙 (equivocal acceptance)

-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애매한 내용이나 형식으로 행하는 승낙으로 양당사자 사이에 불완전한 합의가 있는 것

2. 승낙

■ 승낙의 종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승낙

지연 승낙 (delay of acceptance)

-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한 경우
 - 예 : “화요일 정오까지 승낙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목요일에 도착한 경우

지정기간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우편상의 사고로 지연된 경우

- 청약자가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회답은 청약의 유효기간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받지 않는다는 회답의 통지를 해야 함.
- 통지를 태만히 하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지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됨

처음부터 늦게 발송한 경우

-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원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낙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지만,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불성립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2. 승낙

■ 승낙의 종류

계약을 성립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승낙

의뢰부 승낙 (acceptance With request)

-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만 청약의 내용에 희망사항을 기재하여 승낙, 즉 가능하다면 조건을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승낙하는 것
- 예 : "Accepted. Perferably June Shipment.(승낙한다. 가급적이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라고 승낙하는 것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 승낙

침묵이나 무행위에 의한 승낙

-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각국의 계약법은 승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음에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피청약자가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 예외) 당사자의 종래의 거래관계나 특약으로부터 피청약자에게 승낙여부의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함

2. 승낙

■ 승낙의 통지 방법

승낙의 통지 방법

- 승낙은 다음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함
 - 기존의 방법 :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 팩스
 - 기타 : 온라인거래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상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내용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등

승낙방법이 지정된 경우

-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야 함
 - 예 :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은 EDI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약자가 전자우편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면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승낙하였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승낙방법이 미지정된 경우

-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됨
- 청약이 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텔렉스로 행해진 경우에는 텔렉스로, 각각 승낙하면 됨
-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주위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청약에서 행해진 방법으로 행하면 됨

2. 승낙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발신주의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도달주의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요지주의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될 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2. 승낙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전통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통지의 방법에 따라 원칙과 달리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구분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비엔나협약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대화자간	대면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텔레кс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격지자간	우편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전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2. 승낙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문제의 해결

▶▶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고, 그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상이한 해석의 해결책

- 청약을 할 때마다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을 당사자간에 확인해 두는 방법(계약서 등에 명기하는 방법)
- 청약을 할 때마다 승낙의 회답이 도착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방법("승낙은 몇월 몇일까지 당사에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